

	장학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17		
		제정일	2009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학생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 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) 심의위원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총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, 평생교육원장 및 직전 학생처장으로 한다.
2.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3.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,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조(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.

1. 장학금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
2. 각종 장학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한 사항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직전 학생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간사)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처 직원을 간사로 둔다.

제6조(회의)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록)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 및 보관하며, 차기 회의 시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여 참석위원들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(의결)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장학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17		
		제정일	2009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